15 헌법개정위원회 보고

제102회기 헌법개정위원회 사업경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.

보고인 : 위원장 권성수
서 기 임근석

1. 조 직

- 위 원 장 : 권성수
- 부위원장 : 한기승
- 서 기 : 임근석
- 회 계 : 한승철
- 총 무 : 최상호
- 위 원 : 유장춘, 김승동, 이재륜, 박무하, 김석태, 홍종수, 방윤달, 석종욱, 이정철, 유도조

2. 회 의

1) 전체회의

(1) 제1차 회의

- 일 시 : 2017. 12. 15(금) 11:00
- 장 소 : 대구동신교회
- 결의사항
  ① 위원회 조직은 종전대로 하기로 하고, 보선된 위원은 전 위원의 자리에 두기로 하다.
  ② 제102회 총회의 수임(결의)사항을 확인하다.
  ③ 102회기 헌법개정위원회 사업계획안은 “노회별로 수의자료 당회 하달”을 “노회별로 수의자료 노회원에 전달”로 수정하여 수립하기로 하다.
  ④ 위원회 회의비 외에 사업비로 600만원을 추경 청원(별지)키로 하다.
  ⑤ 헌법 개정 완료 후 개정 헌법책 발간은 출판국과 협의하여 하기로 하다.
  ⑥ 잔무는 임원회(정치, 권징소위원장 포함)에 일임하기로 하다.

(2) 제2차 회의

- 일 시 : 2018. 02. 22(목) 11:00
- 장 소 : 대구동신교회
- 결의사항
  ① 전 회의록은 유인물대로 받기로 하다.
  ② 임원회의 위원회 사업 경과보고는 보고대로 받기로 하다.
  ③ 감사부의 ‘감사서류 제출 협조 요청’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 건은 추인하기로 하다.
  ④ 헌법개정 노회수의 관련 협조 요청을 위한 권역별 위원은 다음과 같이 배정하기로 하다.
  가. 서울서북 지역 - 최상호, 유장춘, 이재륜, 방윤달
  나. 중부 지역 - 한승철, 이정철, 유도조
  다. 호남 지역 - 한기승, 임근석, 김석태
  라. 영남 지역 - 권성수, 박무하, 김승동, 홍종수, 석종욱
  ⑤ 노회 수의 중인 헌법개정안에 대한 질의, 항변 등의 문제는 전국 노회에 공문으로 답변 및 설

명자료를 보내기로 하고, 공문 내용은 임원회에 맡기기로 하다.
⑥ 차기 회의는 6월 11일(월) 낮 12시 대구동신교회에서 모이기로 하다.

(3) 제3차 회의

- 일 시 : 2018. 06. 11(월) 12:00
- 장 소 : 대구동신교회
- 결의사항
  ① 전 회의록은 유인물대로 받기로 하다.
  ② 제102회 총회결의 헌법개정안의 노회별 수의결과 중간보고는 보고로 받고, 총투표 수 미 보고 등 검토가 필요한 부분들과 미보고 노회들에 대하여는 6월 말까지 재보고 받기로 하다.
  ③ 차기 회의는 7월 26일(목) 낮 12시 대구동신교회에서 모이기로 하고, 미진한 부분들에 대한 후속 처리는 임원회에 맡겨서 하기로 하다.

(4) 제4차 회의

- 일 시 : 2018. 07. 26(목) 12:00
- 장 소 : 대구동신교회
- 결의사항
  ① 전 회의록은 유인물대로 받기로 하다.
  ② 102회 총회가 결의한 헌법개정안에 대하여 현재까지 157개 노회 중 127개 노회의 수의결과가 보고됨을 확인하다(자세한 내용은 별첨 보고서 참고).
  ③ 103회 총회보고서 작성 및 개정 헌법책 발간에 대한 것은 임원회에 맡겨서 처리토록 하다.

2) 임원회의

(1) 제1차 회의

- 일 시 : 2018. 01. 15(월) 11:00
- 장 소 : 대구동신교회
- 결의사항
  ① 헌법개정 노회수의를 위한 공문과 자료(노회별로 10부씩)를 1월 30일까지 각 노회에 보내기로 하다(제출기한은 2018년 5월 30일까지 총회에 보고토록 하기로 하다).
  ② 헌법개정 노회 수의를 위한 공문 내용은 총무와 서기에게 일임하기로 하다.
  ③ 헌법개정 노회 수의 공고문을 2018년 2월 첫 주 기독신문에 게재토록 하고, 공고 이후에는 매주 1회씩 전국 노회장과 서기에게 독려 문자를 보내기로 하다.
  ④ 종교인 과세 시행에 따라 교회 내 노동조합과 관련한 문제들이 대두될 수 있으므로, "교회의 직원(항존직, 임시직, 유급 종사자 포함)은 근로자가 아니며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."는 법적 조항의 필요성을 전국 노회에 제안하여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고, 필요하다면 총회에 헌의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하다.
  ⑤ 차기 일정은 추후 필요에 따라 정하기로 하다.

(2) 제2차 회의

- 일 시 : 2018. 05. 28(월) 11:00
- 장 소 : 총회회의실

- 결의사항
  ① 전 회의록은 유인물대로 받기로 하다.
  ② 위원장의 불출석으로 서기 임근석 목사가 위원장을, 총무 최상호 목사가 서기 업무를 대행키로 하다.
  ③ 102회 총회 결의 헌법개정안 노회 수의와 관련하여, 158개 노회 중 현재 80개 노회의 수의 결과가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 받다.
  ④ 노회 출석회원 수를 미 보고한 노회들(구미, 대구, 목포, 서강노회)과, 노회 직인 및 노회장, 서기 직인이 누락된 노회(경남동노회)에는 해당 내용을 통지하여 다시 보고 받기로 하다.
  ⑤ 수정 재보고한 노회들(경남, 빛고을, 시화산노회)은 재보고 사항을 받기로 하다.
  ⑥ 노회 수의결과를 미보고한 노회들에는 6월 7일까지 보고토록 공문을 보내기로 하다.
  ⑦ 미비 사항은 6월 11일 전체회의에서 의논하기로 하다.
  ⑧ 노회 수의를 위한 임원회 활동비를 200만원 청구하기로 하다.

(3) 제3차 회의

- 일　　시 : 2018. 07. 06(금) 13:00
- 장　　소 : 총회회의실
- 결의사항
  ① 위원장의 불출석으로 서기 임근석 목사가 위원장을, 총무 최상호 목사가 서기 업무를 대행키로 하다.
  ② 전 회의록은 유인물대로 받기로 하다.
  ③ 현재까지의 노회 수의결과를 확인하다(총 158개 노회 중 125개 노회가 보고함).
  ④ 노회 수의 결과 보고 내용 중 검토가 필요한 부분들을 확인하여 정리하다.
  ⑤ 차기 임원회의는 7월 19일(목) 오전 11시, 총회회의실에서 모이기로 하다.

(4) 제4차 회의

- 일　　시 : 2018. 07. 19(목) 11:00
- 장　　소 : 총회회의실
- 결의사항
  ① 위원장의 불출석으로 서기 임근석 목사가 위원장을, 총무 최상호 목사가 서기 업무를 대행키로 하다.
  ② 전 회의록은 유인물대로 받기로 하다.
  ③ 현재까지의 노회 수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확인하다.
  가. 총 157개 노회 중 127개 노회가 보고함을 확인하다.
  나. 127개 노회의 총 투표수는 9623표이며, 통과를 위한 투표수는 전체의 2/3인 6416표 이상임을 확인하다.
  다. 총회헌법 정치 제4장 제4조 2항(시무목사)과 관련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체 통과 됨을 확인하다.
  ④ 다음 전체회의에서 제103회 총회에 보고할 최종 보고사항을 정리하기로 하다.
  ⑤ 제103회 총회 시 헌법개정안에 대한 전국노회 수의결과 보고를 위한 임원들의 경비와 헌법책 발행에 대한 건은 총회본부 기획행정국(재무과)과 협의하기로 하다.

(5) 제5차 회의

- 일　　시 : 2018. 07. 30(월) 11:00
- 장　　소 : 총회회의실
- 결의사항
  ① 위원장의 불출석으로 서기 임근석 목사가 위원장을, 총무 최상호 목사가 서기 업무를 대행키로 하다.
  ② 전 회의록은 유인물대로 받기로 하다.
  ③ 헌법개정안 수의결과 미보고 노회들을 각 지역별로 분담하여 전화로 확인하다. 7월 31일(화)까지 팩스로 보고받아 마감하기로 하다.
  ④ 미보고 노회 서기들에게 7월 31일까지 팩스로 보고하도록 문자 통지키로 하다.
  ⑤ 차기 임원회의는 8월 21일(화) 오전 11시 총회회의실에서 모이기로 하고, 103회 총회보고서 내용을 정리하여 검토하기로 하다.

(6) 제6차 회의

- 일　　시 : 2018. 08. 17(금) 11:00
- 장　　소 : 총회회의실
- 결의사항
  ① 위원장의 불출석으로 서기 임근석 목사가 위원장을, 총무 최상호 목사가 서기 업무를 대행키로 하다.
  ② 전 회의록은 유인물대로 받기로 하다.
  ③ 현재 157개 노회 중 136개 노회가 보고하였음을 확인하고, 총결과 내용을 확인하다(별지1 참조).
  ④ 제103회 총회에 보고할 내용을 점검하고 별지와 같이 보고하기로 하다(별지2 참조).
  ⑤ 헌법개정 사후처리에 대한 것을 총회에 청원하기로 하다(별지3 참조).
  ⑥ 헌법개정위원회 경과와 사업결과 및 청원사항은 103회 총회에서 위원장 권성수 목사와 서기 임근석 목사가 보고하기로 하다.

3) 헌법개정안 노회 수의를 위한 소위원회의

(1) 제1차 소위원회의

- 일　　시 : 2018. 01. 29(월) 11:00
- 장　　소 : 총회회의실
- 결의사항
  ① 회의 기록은 총무 최상호 목사가 하기로 하다.
  ② 헌법개정안 노회 수의 및 결과 보고 공문을 154개 노회에 개정안 10부씩과 함께 발송했음을 보고 받고, 해외 노회에는 메일 등으로 보내기로 하다.
  ③ 정기 봄 노회를 앞두고 노회 수의를 독려하는 문자를 전국 노회에 5회 정도 보내기로 하다.
  ④ 차기 전체회의 시 권역별로 위원을 배분하여 헌법 수의와 관련한 협조를 요청하기로 하다.
  ⑤ 헌법개정안 노회 수의를 위한 공고문을 2월 6일자 기독신문에 전면으로 게재하기로 하다(내용 별첨).
  ⑥ 차기 전체회의는 2월 22일(목) 오전 11시, 대구동신교회에서 모이기로 하다.

헌법개정위원회 최종보고

1. 제102회 총회 수임사항

제102회 총회가 개정 결의한 '헌법개정안' 의 전국노회 수의 등 후속 조치

2. 처리 내용 및 최종 결론

(1) 전국노회 수의 결과 총회헌법 정치 제4장(목사) 제4조(목사의 칭호) 2항(시무목사)의 개정은 부결, 나머지 조항들은 모두 개정 가결 됨(법적 근거 : 총회헌법 정치 제23장 제1조).
(2) 전국노회 수의결과 보고 율 : 88% (157개 노회 중 137개 노회가 보고)
(3) 총 투표수 : 10,394표
(4) 개정 유효 투표수 : 6,930표 이상 (10,394표의 2/3 이상)

3. 조항별 노회수의 결과보고 집계

1) 헌법 정치 개정안

(1) 현행 민법과 충돌되는 부분 및 시대 상황에 맞춘 수정

현 행	개 정	비고	총 투표수	개정 찬성	개정 반대	무효	수의 결과
제4장 목사 제2조 목사의 자격 … 연령은 만 30세 이상 자로 한다.	**제4장 목사** 제2조 목사의 자격 … 연령은 **만 29세 이상** 자로 한다.	개정	10394	8609	1463	322	**可**
제3조 목사의 직무	제3조 목사의 직무 **7. 동성애자와 본 교단의 교리에 위배되는 이단에 속한 자가 요청하는 집례를 거부하고, 교회에서 추방할 수 있다.**	추가	10394	8891	1204	299	**可**
제4조 목사의 칭호 2. 시무 목사 … 단, 미조직 교회에서 시무목사의 시무 기간은 3년이요, 연기를 청원할 때에는 당회장이 노회에 더 청원할 수 있다.	제4조 목사의 칭호 **2. 전임 목사** 단, 미조직 교회에서 **전임 목사**의 시무 기간은 3년이요, 연기를 청원할 때에는 **청빙 절차를 거쳐 당회장이 노회에 더 청원할 수 있다.**	용어 수정 개정	10394	2395	7552	447	**不可**
8. 종군 목사	**8. 군종 목사**	용어 수정	10394	9292	775	327	**可**

현 행	개 정	비고	총 투표수	개정 찬성	개정 반대	무효	수의 결과
	9. 군 선교사 **본 교단에서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후 군인 교회를 섬기는 목사이다.**	추가	10394	9315	768	311	**可**
제9장 당회 제1조 당회의 조직 당회는 지교회 목사와 치리 장로로 조직하되…	**제9장 당회** 제1조 당회의 조직 당회는 **노회의 파송을 받아 지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와** 치리 장로로 조직하되,	개정	10394	9120	919	355	**可**
제2조 당회 성수 …장로 1인과 목사의 출석으로… …장로 과반수와 목사 1인이 출석하여야…	제2조 당회 성수 …장로 1인과 **당회장**의 출석으로… …장로 과반수와 **당회장**이 출석하여야…	개정	10394	9253	814	327	**可**
제3조 당회장 당회장은 그 지교회 담임목사가 될 것이나…	제3조 당회장 당회장은 **교회의 대표자**로 그 지교회 담임목사가 될 것이나…	추가	10394	9291	796	307	**可**
제10장 노회 제6조 노회의 직무 8. 어느 지교회에 속한 것을 물론하고 토지 혹 가옥 사건에 대하여 변론이 나면 노회가 처단할 권한이 있다.	**제10장 노회** 제6조 노회의 직무 8. 어느 지교회에 속한 것을 물론하고 토지 혹 가옥 사건에 대하여 변론이 나면 노회가 **지도할** 권한이 있다.	용어 수정	10394	9327	775	292	**可**
제15장 목사, 선교사 선거 및 임직 제13조 다른 교파 교역자 …반드시 본 장로회 신학교에서 2년 이상 수업한 후…	**제15장 목사, 선교사 선거 및 임직** 제13조 다른 교파 교역자 …반드시 본 장로회 신학교에서 **총회가 정한 소정의 수업을 한 후…**	개정	10394	8688	1331	375	**可**
제21장 의회(議會) 제1조 공동의회 5. 회의(會議) 재산권 변동과 관련한 조항 없음	**제21장 의회(議會)** 제1조 공동의회 5. 회의(會議) **… 부동산 변동은 지교회의 규정(정관)대로 하고,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의회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**	내용 추가	10394	9186	936	272	**可**

현 행	개 정	비고	총 투표수	개정 찬성	개정 반대	무효	수의 결과
제2조 제직회 3. 재정 처리 ① 제직회는 교회에서 위임하는 금전을 처리하고 부동산은 노회 소유로 한다(행 6:3~5).	제2조 제직회 3. 재정 처리 ① 제직회는 **공동의회에서 위임하는 금전을 처리한다.**	개정	10394	9244	849	301	**可**
제22장 총회 총대 제3조 언권회원 3. 본 총회의 증경총회장	**제22장 총회 총대** 제3조 언권회원 3. 본 총회의 증경 **총회장과 부총회장** **4. 단, 총회에서 허락을 받아야 발언할 수 있다.**	내용 추가 추가	10394	8958	1061	375	**可**

(2) 어려운 단어를 이해하기 쉬운 말로 수정

현 행	개 정	비고	총 투표수	개정 찬성	개정 반대	무효	수의 결과
제13장 장로, 집사 선거 및 임직 제5조 자유 휴직과 사직 장로 혹 집사가 노혼(老昏)하거나, 신병으로 시무할 수 없거나, 이단이나 악행(惡行)은 없을지라도 교회원 태반이 그 시무를 원하지 아니할 때, 본인의 청원에 의하여 휴직과 사직을 당회의 결의로 처리한다.	**제13장 장로, 집사 선거 및 임직** 제5조 자유 휴직과 사직 장로 혹 집사가 노혼(老昏)하거나, **신병(身病)**으로 시무할 수 없거나, 이단이나 악행(惡行)은 없을지라도 교회원 태반이 그 시무를 원하지 아니할 때, 본인의 청원에 의하여 휴직과 사직을 당회의 결의로 처리한다.	한자 첨가	10394	9356	741	297	**可**

(3) 올바른 단어로 수정

현 행	개 정	비고	총 투표수	개정 찬성	개정 반대	무효	수의 결과
제7장 교회 예배의식 10. 권징(딤전 15:12)	**제7장 교회 예배의식** 10. 권징**(딤전 5:20)**	성구 교정	10394	9337	766	291	**可**
제11장 대회 제1조 조직	**제11장 대회** 제1조 **대회 조직**	제9장, 10장, 12장과 통일	10394	9297	776	321	**可**
제21장 의회 제1조 5. 회의(會議) … 목사 청빙 투표에는 투표수 3분의 2의 가와 …	**제21장 의회** 제1조 5. 회의(會議) … 목사 청빙 투표에는 투표수 3분의 2 **이상의** 가와 …	장로, 집사 및 권사 투표수와 통일	10394	9356	744	294	**可**

(4) 헌법적 규칙 한자 및 용어 수정

현 행	개 정	총 투표수	개정 찬성	개정 반대	무효	수의 결과
제1조 교회 신설(新說)	교회 신설(新**設**)	10394	9365	738	291	**可**
제3조 교인의 권리 소원(所願)	소원(**訴**願)	10394	9343	747	304	**可**
제7조 교회의 선거투표 정원수 이상을 기록한	정원수**를 초과하여** 기록한	10394	9342	755	297	**可**

2) 헌법 권징조례 개정안

(1) 내용 수정 부분

현 행	개 정	비고	총 투표수	개정 찬성	개정 반대	무효	수의 결과
제76조 … 원고가 상회원에게나 일반 민중에게 대하여 변론서나 요령서를 출간 혹 등사하여…	**제76조** … 원고가 상회원에게나 일반 민중에게 대하여 변론서나 요령서를 출간 혹 **복사하거나 기타수단으로…**	개정	10394	9548	515	331	**可**
제94조 부전지 조항 없음	**제94조** **3. 상소인이 소속된 하회가 상소인의 상소통지서 접수를 거부하면 부전(附箋)하여 상회에 상소할 수 있다.**	추가	10394	9516	551	327	**可**

현 행	개 정	비고	총 투표수	개정 찬성	개정 반대	무효	수의 결과
제118조 재판국은 본 국원 중에서 국장과 서기를 택할 것이요…	**제118조** 재판국은 본 국원 중에서 국장과 서기를 **택하여 본회의 허락을 받을 것이요…**	개정	10394	9324	687	383	**可**
제138조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총회가 채용할 때까지 당사자 쌍방을 구속할 뿐이다.	**제138조** 총회 재판국의 **판결문은 총회에 보고하기 위한 것이며,** 총회가 채용할 때까지 당사자 쌍방을 구속할 뿐이다. **다만, 재산권에 관한 판결은 예외로 한다.**	개정 (본회 결정 후에 유효) 추가	10394	9453	606	335	**可**
제139조 재판국 서기는 본국 재판 사건의 진행과 예심 판결을…	**제139조** 재판국 서기는 본국 재판 사건의 진행과 **판결문**을…	개정	10394	9546	517	331	**可**

(2) 용어 수정 부분 (이해가 쉬운 말, 올바른 단어로 변경)

현 행	개 정	총 투표수	개정 찬성	개정 반대	무효	수의 결과
제10조 …쌍방으로 종용히 사화하게 하고	**제10조**…쌍방으로 종용히 **화해하게** 하고	10394	9557	499	338	**可**
제12조 만일… 방조자를 지명 청구할 수 있고 … 본 회원 중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을 선정하여 방조할 것이다.	**제12조** … **변호인**을 지명 청구할 수 있고 … 본 회원 중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을 선정하여 **돕게 할** 것이다.	10394	9537	509	348	**可**
제21조 소환장은 … 의식송달(意識送達) 합당하다.	**제21조** 소환장은 … 의식송달(**依式**送達) 합당하다.	10394	9535	517	342	**可**
제22조 피고가 … 그 소환장에 대하여 천연적 고장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면….	**제22조** 피고가 … 그 소환장에 대하여 **불가피한 사유**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면….	10394	9553	503	338	**可**
제27조 2. … 선정한 방조 위원이 치리회의 변호인이 된다.	**제27조** 2. … 선정한 **변호인**이 치리회의 변호인이 된다.	10394	9545	509	340	**可**
제51조 … 다시 교회의 종교의식에 출석하면 해벌한다.	**제51조** …다시 **교회의 각종 의식에** 출석하면 해벌한다.	10394	9531	523	340	**可**
제61조 증인을 심문하는 차서는 …	**제61조** 증인을 심문하는 **순서**는 …	10394	9553	511	330	**可**
제90조 … 변호인의 방조를 청구한다.	**제90조** … 변호인의 **도움을 구할 수 있다.**	10394	9567	506	321	**可**
제93조 … 반드시 가책할 것이	**제93조** … 반드시 **문책할** 것	10394	9556	509	329	**可**

현 행	개 정	총 투표수	개정 찬성	개정 반대	무효	수의 결과
요… 권리를 의구히 보존하게 한다.	이요… 권리를 **변동 없이** 보존하게 한다.					
제94조 2. 공소심에는 부득이한 경우에 증거조를 취급할 수 있고, 상고심에서는 증거조를 폐한다.	**제94조** 2. **항소심**에서는 부득이한 경우에 증거조를 취급할 수 있고, 상고심에서는 증거조를 **폐하고 법률심(法律審)으로 한다.**	10394	9542	510	342	**可**
제134조 1. 총회 폐회 후에… 회장이 자벽하여…	**제134조** 1. 총회 **파회** 후에 … 회장이 **지명**하여 …	10394	9546	513	335	**可**
제141조 … 총회 폐회 때부터 그 판결은 확정된다.	**제141조** … 총회 **파회** 때부터 그 판결은 확정된다.	10394	9523	521	350	**可**

(3) 오탈자 수정

현 행	개 정	총 투표수	개정 찬성	개정 반대	무효	수의 결과
제 2조"권병(權**炳**)"	권병(權**柄**)	10394	9520	505	369	**可**
제13조"…조사 회보케 할 것이요 그 치리는 그 위원의 회보를 접수하여…"	**치리회는**	10394	9561	498	335	**可**
제20조"치리회가 재판회를 회집하면"	**재판회로**	10394	9543	513	338	**可**
제52조"…만 1년간 유예를 지난 후 노회 관할에"	**관찰(觀察)에**	10394	9552	519	323	**可**
제63조"…재판회가 필요로 인증할 때에는"	**필요하다고 인정할**	10394	9568	506	320	**可**

3) 유아세례연구위원회에서 보고한 개정안

현 행	개 정	비고	총 투표수	개정 찬성	개정 반대	무효	수의 결과
예배모범 제11장 **2. 유아세례** **(헌법적규칙 제6조 성례(聖禮) 2와 동일)** (1) 만 2세까지 유아(乳兒)세례를 줄 수 있으되 부모 중 한편만이라도 세례교인이면(혹은 입교인이면)	**예배모범 제11장** **2. 유아세례** **(헌법적규칙 제6조 성례(聖禮) 2와 동일)** (1) **만 6세까지 유아(幼兒)세례를, 만 7세부터 13세는 어린이 세례를 줄 수 있으되, 부모 중 한**	개정	10394	6966	2819	609	**可**

현 행	개 정	비고	총 투표수	개정 찬성	개정 반대	무효	수의 결과
줄 수 있다.	**편만이라도 세례교인이면 (혹은 입교인이면) 줄 수 있고, 부모의 부재 시 당회의 허락으로 가능하다**.						
예배모범 제11장 **3. 입교** **(헌법적규칙 제6조 성례(聖禮) 3과 동일)** (2)유아세례 받은 자가 만 14세 이상이 되면 입교 문답할 연령이 된다.	**예배모범 제11장** **3. 입교** **(헌법적규칙 제6조 성례(聖禮) 3과 동일)** **(2)유아세례나 어린이세례를 받은 자가** 만14세 이상이 되면 입교 문답할 연령이 된다.	개정	10394	7536	2323	535	**可**

청 원 서

수신 : 총회장
참조 : 서 기
제목 : 헌법 개정에 따른 추후 처리 청원 건

103회 총회에서 공포 된 헌법개정 내용을 기독신문에 공고하여 전국교회에 알리는 일, 개정 헌법책을 총회출판국과 협의하여 출간하는 일, 그리고 출간 된 개정 헌법책을 전국 노회에 비치용으로 한 권씩 발송하는 일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8년 9월

헌 법 개 정 위 원 회
위원장 권 성 수
서 기 임 근 석